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31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3128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381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유영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론종결 2022. 10. 25.

판결선고 2022. 12. 20.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381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0.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2. 접수 제95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6쪽 2 ~ 4행의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C의 다른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 없다.”를 “발생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4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무렵이나 그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도 수년 이상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C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C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 증인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만 해도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자식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한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김광섭, 판사 황기선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1419.77㎡, 2층 1361.79㎡, 3층 1361.79㎡, 4층 1361.79㎡, 5층 1361.79㎡

6층 1361.79㎡, 7층 1361.79㎡, 8층 1361.79㎡, 9층 1361.79㎡, 10층 1361.79㎡

11층 1361.79㎡, 12층 1361.79㎡, 13층 1361.79㎡, 14층 1361.79㎡, 15층

1361.79㎡

옥탑1층 94.88㎡

옥탑2층 94.88㎡

지하실 1343.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3213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37.4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2139.2분의 61.30

-이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판함-

